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11.23(목)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임회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3. 제안 이유

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2016년 9월 폐지되고, 지방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,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의 조문 번호 변경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

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2016년 9월 폐지되고,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, 안제2조의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